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재난 유형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피해 추가〉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39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2.
3. 회부연월일 : 2024.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사고 등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유형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주택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나. ----- ----- ----- ----- ----- ----- ----- ----- ----- -----

현행	개정안
먼지,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 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 ----- 인한 피해, 원전 오염수 방 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 해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자
연재난과 사회적·인위적 현상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¹⁾하면
서,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우리
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원전 오염수 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
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
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
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류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상 규정과의 중복 여부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은 사회재난의 유형 중 하나로 ‘화생방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화생방’은 화학, 생물학, 방사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방사능사고로 인한 피해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피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재난 및 각종 사고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²⁾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유형으로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규정하고 있음.

셋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³⁾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능사고 및 방사능오염확산에 대한 긴급조치⁴⁾’, ‘방사능재난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2조의2(긴급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선포5)',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6)' 등을 규정하여 방사능재난의 대비·대응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넷째, 현행법은 대규모재난 발생 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면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7)하고 있음.

는 방사능사고 및 방사능오염확산 또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능오염원의 제거, 방사능오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1.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 또는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1.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역
3. 방사능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조치사항

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본부의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④ 중앙본부에 간사 1명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중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위와 같이 기존 법령에 이미 방사능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대응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추가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법상 ‘화생방사고’에 방사능 오염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방사능 오염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도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입법 여부 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경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매뉴얼 개발 및 실시 등에 따른 추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미 현행법에 근거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방사능 오염사고 관련 예방 및 대응, 방사능 물질의 해양 유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 일부 수행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기존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신규 사업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9